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계획

- 철새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 차단방역 강화 -

2016. 11.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1. 추진배경		1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기준		2
3.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관리사항		3
4. 향후계획		7

〈 참고자료 〉

1.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련 법령		8
2. '17년도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11
3. 지역별 철새도래지 현황[환경부]		14
4. 강화 시설기준 적용 대상 및 단계별 추진 계획		16

1. 추진배경

- 철새가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추정되고, 주로 철새도래지 등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철새와 가금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안성, 천안, 음성 등 '14년도 발생시군 중 재발시군(12개소) 대부분이 철새도래지에 위치

- 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 밀집지역을 'AI 중점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5.6.22)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검사·예찰·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함

(그간 추진현황)

- AI 방역관리지구 설정 방안 마련(AI 방역체계 개선방안, '14.8.14)
- AI 방역관리지구 방역특별관리 추진계획 시행('14.10.19)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15.5월 ~ 11월)
 -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설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 포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5.6.22) 및 시행(12.23)
 - * 관련조항 : 가전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기준

가 지정 세부기준

-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야생조류나 야생조류의 분변·폐사체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읍·면·동

* 다만, ① 가금사육농가가 없는 곳은 제외하고, ② 'AI SOP'의 위험도평가를 고려해 반경 10km 범위는 조정 가능하며, ③ 필요시 지역 최소 단위를 '리'로도 설정 가능

- 철새 분변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를 위해 지정한 철새도래지

*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철새도래지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철새 예찰사업 지역도 포함

②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12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읍·면·동

③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축산농가는 사육면적이 50m² 이상인 농가로 하되, 사육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축산법의 축종별 '마리당 사육시설면적' 등을 고려

나 해제 세부기준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세부기준 ①'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②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세부기준 ②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③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세부기준 ③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결과 및 관리방안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결과

□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325개소 지정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지역(288개소)

- 야생조류 등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최근 3년 이내 검출 지역은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전남 영암 등 181개소

- 철새 분변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를 위한 지역은 철새도래지 107개소

- * AI 상시예찰 검사계획에 따라 야생조류 등에 대한 시료채취 권한을 부여
코자 지정한 철새도래지이므로 그 주변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미 실시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은
충북 음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무안 등 22개소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은 세종, 전남 나주, 경북 경주, 경남 양산 등 15개소

나 방역관리사항

① 방역기준 강화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
- ① 축사내로 AI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복·신발 보관장소, 탈의실
등을 구비한 전실(의자, 전용 장화 등 포함) 설치
- ② 농장주변 담장은 사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목재·
콘크리트 등의 견고한 재질로, 울타리는 기둥 및 기둥연결선으로 설치
 - * 신규 진입 농장은 담장 설치 기준 강화(예; 설치류가 출입할 수 없는 담장 설치)
- ③ 분뇨, 차량 등에 대한 농장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차량바퀴의 흙,
분뇨 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설치

② 정부지원 강화

◇ AI 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 관련 시·도와 사전협의('16.10월)를 통해 '1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7년도부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1 기존 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가금운반 차량 등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 등을 우선 지원

* '17년도 지원계획 : 거점소독시설(20개소, '15년 신규), 스팀소독기(10개, '16년 신규)

- ② **가금 질병전문가를 통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에 대한 가금
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추진**(‘17년도 사업대상 500호, '15년 신규)

○ 시·도와 대상농가 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실시('16.10월)

- ③ **사육면적 50m² 이상의 소규모 가금농가 및 가든형식당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 지원 강화**(1회/월)

- ④ **새로운 방역기준을 설정해 조속히 방역관리에 취약한 축사가
보완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14.10월)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중심으로 시설취약농가 목록을
구축하여 집중 지원하되, 방역시설기준 의무사항 부과

- ⑤ **정책자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기존
가금농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유도**

○ 방역관리지구에서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축사 신축
비용* 및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16년~)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기존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③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방역 특별관리**

① **농식품부**

○ 매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AI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16.9.30일)하고 이에 대한 예찰 등 운영계획* 수립(11.30일)

* 시·도, 검역본부 등과 협의하여 질병 예찰, 농가 교육·홍보, 방역관리
실태 점검,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운영계획 수립

< '17년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상시예찰 검사 추진계획(안) >

- ① (철새분변 시료검사)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지역별 2~4회/월 실시
- ② (종오리 농장) 농장별 월 1회 항원검사 및 반기별 1회 혈청검사
- ③ (육용오리 농장) 농장별 출하전 2회(폐사체 및 출하 전 검사) 실시
및 소규모 오리농가(20수 이상) 분기별 1회 실시
- ④ (기타 가금) 농장별 분기 1회 항원검사 추가 실시(강화)

② 검역본부

- 지자체, 방역본부 등과 협조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지구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 관리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위치추적기 부착 철새 이동상황 및 국내 철새 정기 모니터링을 활용한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운영*(16.9월말)
 - * 환경부·검역본부(철새 관련 정보파악) → 검역본부(철새정보 통보) → 지자체·협회 등(농가에 경보발령) → 농가(소독 등 방역관리강화)
- 중앙기동점검반,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지도
 - (점검대상 및 횟수) 가금사육농가 및 축산관련시설*(반기 1회 이상), 방역강화관리대상**(월 1회 이상)
 - * 사료공장 및 하치장, 가금도축장, 왕겨업체, 분뇨처리업체 등 축산관련 시설
 - ** 닭·오리 판매소, 거래상 계류장,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가
 - (점검방안) 단계별 지자체 및 중앙기동점검반 지도·점검 추진
 - (1단계) 지자체에서 농가 및 축산시설별 지도·점검
 - (2단계) 중앙기동점검반은 지역별 분기 1회 지도·점검

③ 지자체

-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지구내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해 세척·소독 강화
 - 진입로 및 축사주변 정기적 소독 실시(주 1회 이상)
 - 축산단지형 지구의 분뇨·사료차량 등의 출입구 일원화 및 가금 밀집지역 출입 분뇨·사료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증 휴대 의무화
-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울타리·소독조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 등 농가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월 1회 이상)
 - * 시험소 등에서 시료채취 등 농가 방문시 AI 임상증상, 전파경로 및 소독방법 등 교육

○ 전화·임상 **예찰**(주 1회)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가상방역 훈련(CPX)**** 강화 등 비상시 대비 철저

* (현행) 오리 1회/분기, 닭·기타 1회/반기 → 오리 2회/분기, 닭·기타 1회/분기

** (현행) 매년 도별 3개 시·군 이상 → (개선) 매년 지구내 전 시·군 실시

○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사이에 위치한 논을 사전에 파악, 철새가 도래하기 전에 **벚집 제거 및 논 갈아엎기 추진**

○ 지구 내에서 위험시기*에는 AI 조기발견 및 수평전파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축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 후 반출**** 의무화

* 위험시기 : ① 야생철새·분변에서 AI(H5·H7형) 항원·항체 검출 등으로 AI 주의보 발령시 1개월, ② 지구내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 (현행) 모든 오리 및 AI 발생 시에만 이동승인서 발급 → (개선) AI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저병원성 AI 등 위험성 발생시 이동승인서 발급

- (발급절차)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신청(농장주) → 출하예정 가금 AI 정밀검사(지자체) → 이상 없으면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지자체)

○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에 대하여도 **올인 올아웃(all-in-all-out)**을 추진하여 AI 발생위험 최소화

- 지자체는 계열사로부터 올인 올아웃 추진사항을 제출받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 후 매월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 올인 올아웃 미이행시 계열사평가를 통해 축산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

④ 생산자단체·계열업체

○ (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속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요령 교육·홍보**(월 1회 이상)

- (생산자단체) 방역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점검 추진계획 수립, 그 실시결과를 지자체에 제출(분기별 1회)

-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해 매월 방역관리 추진계획 수립, 그 실태 정기점검결과 및 올인 올아웃 추진 여부 지자체에 보고

- (방역본부) 농가별 전담 전문전화예찰요원이 주 1회 이상 문진

⑤ 축산농가

- 축사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이행
 - 농장 내·외부 및 축사내부용 신발 구분 착용, 축사주변 충분한 생석회 도포 및 소독 강화 등 추진(주 2회 이상)
 - 단지화 되어있는 지구는 출입구를 단일화 하여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시설 운영 등 농장 방역 강화
 - 축사내 야생조류·쥐 등 야생동물 유입방지를 위해 그물망·울타리 설치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주 1회)
- 위험시기에 가축 이동시 지자체에 이동승인서 신청 및 특별 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오리에 대하여 울인 올라웃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협회 및 계열업체 등으로부터 소독방법 등 차단방역에 대한 방역교육 이수(월 1회)

4. 향후 계획

- (농식품부) '17년도 AI 상시예찰 계획(안) 마련('16.12월)
- (시·도) '17년도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조치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통보('16.12.31일)
- (시·군·구)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17년도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16.1.31일)
- 관련 기관 및 단체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축산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참고 1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예찰(豫察)·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17년도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288개소)

○ 야생조류 등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최근 3년 이내 검출 지역(181개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송정동, 봉림동
울산	울주군	웅촌면
세종	세종시	소정면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서운면, 일죽면
	용인시	원삼면, 백암면
	이천시	모가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수원시	당수동, 탑동(검역본부협의후 제외예정)
	화성시	비봉면, 남양읍, 정남면, 향남읍, 봉담읍, 우정읍, 장안면
	광주시	초월읍, 역동, 직동
	파주시	광탄면, 교하동, 문산읍, 법원읍, 월릉면, 탄현면, 파주읍, 파평면
	김포시	월곶면, 통진읍, 양촌읍
강원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봉산동, 반곡관설동
	횡성군	횡성읍
	철원군	동송읍(양지리, 이길리, 대우리, 장흥리), 갈말읍(내대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청주시	남이면, 옥산면, 오송읍, 강내면, 오창읍, 수의동, 비하동, 북이면, 내수읍
	옥천군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괴산군	사리면, 청안면
	진천군	덕산면, 진천읍, 이월면, 초평면, 광혜원면, 문백면, 백곡면
충남	천안시	풍세면, 광덕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동면, 북면, 목천읍
	아산시	염치읍,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6동
	논산시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부적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당진시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서산시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갈산동
	부여군	충화면
	서천군	기산면, 시초면, 문산면, 마산면
	홍성군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전북	고창군	홍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정읍시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용계동, 삼산동, 상평동, 이평면, 정우면, 태이면, 감곡면, 덕천면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김제시	청하면, 공덕면, 백구면, 용지면
	익산시	오산면, 춘포면, 왕궁면, 덕기동, 석왕동, 신흥동
	전주시	남정동
	완주군	이서면
	군산시	나포면, 성산면, 지곡동
전남	나주시	노안면(양천리, 오정리), 문평면, 다시면(청정리)
	담양군	담양읍, 대전면, 대덕면(비차리), 무정면(봉안리, 성도리, 영천리), 봉산면, 수북면, 월산면(오성리, 월평리), 창평면(광덕리, 용수리, 유곡리, 유천리)
	해남군	산이면, 문내면(무고리)
	영암군	삼호읍(난전리)
	함평군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대동면
	장성군	삼서면, 진원면(학림리)
경남	창원시	동읍
	창녕군	도천면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한경면, 한림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 철새 분변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를 위해 지정한 지역(107개소)

시 도	철새도래지		
	철새 분변 검사 지역(56개소)	시 군 구	철새분변검사 중복지역 외 51개소 야생조류 포획 지역(92개소)
서울	강서지구, 중랑천, 탄천, 안양천	강남구	탄천
		송파구	탄천
		성동구	중랑천
		강서구	강서습지 생태공원 일대
부산	울속도, 낙동강 하구	사하구	울속도
대구	금호강	동구	금호강
인천		-	-
울산	태화강	울주군	태화강
광주		광산구	영산강
		북구	영산강
경기	청미천, 신대저수지, 시화호, 서호, 안성천, 경안천, 상패천, 왕송호수, 한강하구, 황구지천, 문산천	안성시	안성천, 청미천
		용인시	청미천
		평택시	안성천, 진위천
		화성시	황구지천
		포천시	포천천
		수원시	황구지천
		여주시	남한강
		이천시	북하천
		김포시	후포리 일대
강원	한탄강(동송읍), 토교저수지	원주시	원주천
		동해시	관내 해안일대
		삼척시	관내 해안일대
충북	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음성군	미호천
		진천군	미호천
		증평군	보강천
		청주시	미호천, 병천천, 무심천(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및 관내 백로번식지
		옥천군	옥천군 일원
충남	천수만, 풍서천, 곡교천, 금강호, 병천천, 간월호, 송정저수지, 봉강천, 도당천, 논산천, 삽교호, 봉선저수지, 해미천	아산시	곡교천, 봉강천, 염치저수지
		천안시	곡교천, 병천천, 풍서천, 봉강천, 용연저수지

		논산시	논산천, 노성천, 금강, 탑정호 및 관내 백로번식지 일대
		서산시	도당천, 청지천, 천수만, 산수저수지 간월호 및 해미천 일대
		공주시	정안천, 금강
		부여군	금강
		서천군	관내 저수지 일대
		홍성군	간월호 및 관내 해안일대
		태안군	관내 해안일대
전북	금강하구둑,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전주시	만경강, 전주천 및 관내 백로번식지
		완주군	만경강
		김제시	만경강 및 관내 저수지 일대
		익산시	만경강
		고창군	동진강, 고부천, 동림저수지
		부안군	동진강, 고부천, 새만금 일대
		정읍시	동진강, 고부천, 정읍천 및 관내 백로번식지
전남	영산강, 영암호, 산수저수지, 고막원천, 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함평대동저수지	광주시	황룡강
		해남군	영암호, 금호호 및 관내 저수지 일대
		나주시	지석천, 영산강
		함평군	대동저수지, 고막원천
		영암군	영암천
		무안군	영산강
		담양군	영산강
		강진군	탐진강
		영광군	관내 해안일대
		보성군	관내 해안일대
		장흥군	관내 해안일대
경북	-	구미시	구미해평
		김천시	금호강
경남	장척저수지, 주남저수지, 창녕우포	창원시	주남저수지
제주	하도리, 용수저수지, 오조리(성산포)	-	-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22개소)

시 도	시 군 구	읍면동
경기	안성시	미양면
충북	진천군	문백면,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대소면
충남	천안시	풍세면, 성남면
전북	부안군	동진면
	정읍시	입암면, 고부면
	김제시	용지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 노안면, 세지면
	강진군	성전면
	영암군	신북면, 덕진면, 시종면, 도포면
	무안군	현경면
	담양군	담양읍
	곡성군	옥과면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15개소)

시 도	시 군 구	읍면동
세종	세종시	부강면
강원	횡성군	횡성읍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남	천안시	풍세면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익산시	낭산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
경북	경주시	천북면(신당리)
	영주시	장수면(갈산리), 안정면(대평리)
	봉화군	봉화읍(도촌리)
	칠곡군	지천면(연호리)
	포항시	홍해읍(성곡리)
경남	양산시	상북면
제주	제주시	한림읍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2개 이상 부합되는 지역은 해제기준 적용
등을 위해 각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모두 표시

참고 3**지역별 철새도래지 현황(200개소)**(환경부 모니터링 기준)

시도(15)	시군구(108)	도래지(200)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5개)	성수-성산, 성산대교-행주대교, 증랑천, 탄천 (4개소)
대구	달성군 (1개)	화원읍, 금호강 (2개소)
인천	강화군, 중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4개)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영종도(운북동), 영종도(운남동, 삼목동), 송도, 청라지구 굴포천 하구 (7개소)
부산	금정구, 사하구, 기장군 (3개)	회동(오륜대)저수지, 낙동강 하류, 낙동강 하구, 부산-울산 해안 (4개소)
울산	울주군, 남구 (2개)	회야호, 울산만, 태화강 (3개소)
광주	광산구	황룡강 (1개소)
경기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안산시, 의왕시,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연천군, 하남시, 안양시, 광주 (19개)	연천군, 성수-팔당댐, 안양천, 팔당호(경안천 포함), 남한강(양평-여주), 남한강(여주-충주), 북한강(청평댐-화천교), 한강하구·김포평야·공룡천, 한강하류·이화동, 임진강(장남교-오두산전망대), 대부도, 시화호, 왕송저수지, 물왕저수지, 발안저수지, 서호, 진위천, 이동저수지, 고삼저수지, 청미천, 남양만, 남양호 (22개소)
강원	철원군, 횡성군, 춘천시,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8개)	철원평야, 횡성호, 섬강, 소양호(하류), 원덕-삼척해안, 삼척-강릉해안, 경포호, 남대천(강릉), 강릉-주문진해안, 주문진-양양해안, 남대천(양양), 양양-속초해안, 청초호, 영랑호, 속초-간성해안, 송지호, 화진포, 간성-대진해안, 고성군해상(19개소)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서천군,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10개)	풍서천, 곡교천, 봉강천, 아산만, 아산호, 삽교호, 예당저수지, 석문간척지, 대호, 가로림만, 태안군 이원면해안, 태안군 근흥면해안, 수룡저수지, 태안군 남면해안, 안면도, 간월호, 부남호, 잠흥저수지, 성암저수지, 인평저수지, 풍전저수지, 장항해안, 봉선저수지, 부사간척지, 유부도, 금강 상류, 금강 중류, 탑정저수지(28개소)
충북	청원군,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충주시(5개)	대청호, 미호천, 백곡지, 초평지, 괴산호, 충주호(6개소)

시도(15)	시군구(108)	도래지(200)
경북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 영덕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8개)	울산-구룡포해안, 구미 해평(도흥리-일선교), 감천, 낙동강(일선교-안동시), 내성천, 안동호, 임하호, 덕동호, 보문호, 형산강(나정교-강동교), 형산강(신흥산교-제1강동교), 안계저수지, 용연지, 하곡지(딱실못), 포항-영덕 해안, 영덕-평해 해안, 평해-울진해안, 울진-원덕해안 (18개소)
경남	하동군, 광양,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거제시, 창원시, 창녕군, 합천군, 고령군, 밀양시, 김해시 (13개)	섬진강하구·수어천 하류, 남해해안, 창선도, 사천만, 진양호, 고성군 거류면·동해면(당도만), 대가저수지, 거제도해안,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지, 봉암갯벌, 우포저수지, 목포, 사지포, 합천호, 황강, 낙동강(달성-삼지), 낙동강(남자-삼랑진), 낙동강(삼랑진-대동) (20개소)
전북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임실군, 고창군, 완주군 (7개)	금강하구, 금강호, 만경강, 옥구저수지, 옥려저수지, 만경강 중류, 동진강, 청호저수지, 조류지, 능제, 백산저수지, 고마제, 옥정호, 동림저수지, 곰소만, 고창해안, 경천저수지 (17개소)
전남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순천시, 보성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21개)	장성호, 담양호, 영산강 상류, 동북호, 지석천, 법성포, 영광-함평 해안, 대동댐, 무안군·현경면·운남면, 무안군 해제면·신안군 지도읍, 무안저수지, 무안-목포 해안, 압해도, 암태도, 영산호, 우습제, 영산강 중류,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랑초(개초)저수지, 군내간척지, 둔전저수지, 주암호, 상사호, 보성강저수지, 완도호, 해남군 신방지, 군곡저수지, 해원저수지, 강진만,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고금도, 조약도, 장흥 해안, 보성만-득량만, 점암저수지, 고흥호, 포두면 간척지·해창만, 여자만, 순천만, 광양만·갈사만 (43개소)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2개)	성산-남원, 성산, 용담-대정, 서귀-안덕, 하도리, 함덕-하도 (6개소)

참고 4 강화 시설기준 적용 대상 및 단계별 추진 계획

◇ (검토 필요성)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모든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사육면적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 어려움

○ 적용대상 : AI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16.2.22. 까지 허가기준 사육면적에 해당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자로 함(축산업으로 허가·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육면적 기준으로 적용)

①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15.2.22. 이전)

②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15.2.22. 부터 '16.2.22. 까지)

③ 50㎡ 이상이면서 닭 950㎡ 미만, 오리 800㎡ 미만('16.2.22. 부터)

* 메추리 등 기타 가금류는 닭 기준으로 적용

○ 적용 추진계획

<신규 가축사육업자>

- 신규 가축사육업자는 '16.10.1일 이후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강화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기존 가축사육업자>

- 적용대상 ①에 해당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은 '17.3.31일까지 적용

- 적용대상 ②에 해당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은 '17.9.30일까지 적용

- 적용대상 ③에 해당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은 '18.9.30일까지 적용

※ 현행 축산법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 가금류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에 산란계(1,300㎡ 이하),육계(1,400㎡ 이하),오리(1,230㎡ 이하)의 경우 소독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및 전실을 설치 의무